

[] 박물관 [] 등록
[] 미술관 [] 변경등록 신청서

변경등록 신청시에는 *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		등록 : 40일/변경등록 : 5일 (다만,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인 경우 20일)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박물관 · 미술관	명칭	
	종류(1종/2종)	유형
	소재지	개관연월일
	설립자 성명(명칭)	설립자 주소
	대표자 성명(명칭)	대표자 주소
	*등록번호	*등록 연월일
변경사항	변경 전	
	변경 후	
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제1항·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, 제10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]등록, []변경등록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·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· 귀하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

첨부 서류	<등록 신청 시>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(자료의 사진 첨부) 1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<변경등록 신청 시> - 등록증(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·종류,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·주소,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.) -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시설명세서,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, 학예사 명단,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)	수수료 없음
-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요령

1. 신청인 :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.
2. 종류 및 유형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3. 개관연월일 :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및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.
4. 설립자 및 대표자 :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의 명칭)을 적습니다.
5.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: 기존 박물관·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신청인



접수 및 검토



검토



등록증 발급

처 리 기 관 : [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(박물관·미술관 등록 담당부서)]